

전주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285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피고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 2021. 4. 21.

판결 선고 2021. 5. 26.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8. 12.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725,4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보전채권

갑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21. D에게 42,000,000원을 이자 연 8.9%, 연체이자 연 25%,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 D이 2019. 3. 20.부터 위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10. 21. 기준 D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나머지 대출금의 원리금이 합계 20,725,461원(= 원금 18,614,501원 + 이자 1,129,616원 + 연체이자 981,344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D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증여계약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11. 8. 2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D이 2018.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7.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D에 대하여 29,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D로부터 대물변제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지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D에게 2017. 5. 8. 4,000,000원, 2018. 6. 21.

25,000,000원이 각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증여사실을 뒤집어 피고가 D에게 위 합계금 29,000,000원을 대여하였다거나 또는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물변제약정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의 채무초과

1) 인정사실 가) D은 2019년경 전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1. D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20. 8. 6. 폐지결정을 하였다.

나) 한편, D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위 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D이 2019. 1. 10. 당시 부담하는 채무의 합계액이 원금 54,723,182원, 이자 772,716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주)E	2001.9.21. 카드대금	1,446,994	16,221
2	F(주)	2002.2.27. 카드대금	4,538,706	134,780

1	(주)E	2001.9.21. 카드대금	1,446,994	16,221
3	G(주)	2017.9.15. 신용대출	18,394,706	351,547
4	H(주)	2012.12.3. 카드대금	1,235,020	9,088
5	원고	2017.7.21. 중고차대출금	20,669,074	40,318
6	(주)I	2017.8.1. 신용카드대금	2,654,488	35,785
7	(주)J	2018.4.20. K신규 대출	2,241,672	65,148
8	L(주)	2015.1.9. 카드대금	1,866,400	62,520
9	M(주)	2018.9.20. 대출금	1,676,122	57,309
합계	54,723,182	772,716		

다) D이 위 개인회생 신청사건에서 2019. 10. 7. 작성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는 월 평균 1,750,000원의 근로소득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D이 2011. 8. 23.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거래가액은 33,000,000원이고, 피고가 2019. 2. 20. N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당시 거래가액은 29,00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가액이 29,000,000원 내지 33,000,000원에 불과한 이 사건 건물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과 가까운 2019. 1. 10. 당시 원금만 54,723,182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D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피고는 D에 대하여 29,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D와의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그러한 행위가 D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에게 29,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및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 및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나.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그와 같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로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2. 20. N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9.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N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D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가액 및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의 한도 내에서 20,725,4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12. 24.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725,4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중문

별지